



제438회국회(임시회)
제 2 차 국 방 위 원 회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투력 유지 및
안전성을 고려한 내용연수 설정 등 〉
■ 유용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999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공 춘 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전투력 유지 및 안전성을 고려한 내용연수 설정 및 내용연수에 대 한 정기적 평가·조정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유용원의원 등 13인
2. 발 의 일 : 2026. 7. 16.
3. 회 부 일 : 2026. 7.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가상각 등이 필요한 군수품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그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 무기체계의 경우에는 단순한 감가상각의 기준뿐만 아니라 전투력 유지와 운용 안전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내용연수가 실제 운용 여건과 맞지 않는 경우 전력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내용연수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전투력 유지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내용연수를 정하도록 하고 개인화기, 군장류 등 장비 전투력 및 안전에 영향이 큰 전비품의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이 매년 내용연수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

하도록 함으로써 군수품 관리의 합리성과 무기체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1. 전투력 유지 및 안전성을 고려한 내용연수 설정 및 내용연수에 대한 정기적 평가·조정

[신·구조문대비표]

– 3 –

<신 설>	<u>품의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u> <u>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내용연수의 적정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u>
--------------------	---

- 내용연수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으로서 자산이 사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말하며, 주요물품에 대하여 물품의 최소 수리비로 그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소모품의 경제적 사용기간으로도 볼 수 있음.¹⁾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는 물품수급관리의 참고자료, 물품의 평가액 산정의 기초자료, 수리한계비용 산출시 자료, 기업회계의 감가상각 기간 기준 등으로 활용됨.

- 개정안에 따른 전투력 유지 및 안전성을 고려한 군수품의 내용연수의 설정, 내용연수 불초과 관리, 적정성 평가를 통한 내용연수의 변경 등은 실제 운용 여건에 부합하는 군수품의 내용연수 관리 방법으로서 전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1)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2025. 11., 행정안전부

□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국방부는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고 있고, 최초 운용수명이 설정된 이후의 수명 연장 및 단축의 절차는 ‘장비 수명관리 지침’을 적용하며, 설정된 수명이 초과되지 않도록 적기에 수명연장 또는 단축 후 도태 및 불용결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훈령 등으로 규율하고 있는 군수품의 내용연수 설정, 내용연수 불초과 관리, 적정성 평가를 통한 내용연수의 변경 등을 법률 사항으로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내용연수 및 수명평가 관련 국방부 훈령 등]

군수품 관리 훈령 제29조의2 (내용연수)	장비 수명관리 지침 제7항 (장비 수명평가위원회 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관리법」 제21조 및 이 훈령 제11조의2에 따라 비소모품(내구성물품)에 대해 <u>장비 설계수명,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내용연수, 유사품목 내용연수 등을 바탕으로 군 평균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국가품목 식별번호(NIIN)별로 내용연수를 선정할 수 있다.</u> ② 장비의 수명관리를 위해 소요군(기관)은 소요제기 시 내구도, 유사장비 수명, 차기 신형장비 전력화 주기 등을 고려하여 <u>요구수명을 제시</u>하며, 사업 주관부서(기관)는 무기체계나 구성품을 설계, 제작한 후 운용 환경조건을 적용하여 통계적으로 예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u>설계수명을</u>	가. 장비 운용간 수명 최신화를 위해 국방부, 각 군(기관)에서는 <u>장비 수명평가위원회</u>를 운영한다. 나. 장비 수명평가위원회는 연 1회 정례위원회를 실시하고, 소요 발생시 수시로 실시하여 운용장비의 수명을 상시 최신화하여 관리한다. 다. 장비 수명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시 민간전문가는 1인 이상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안 등의 사유로 민간전문가 포함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승인을 득한 후 구성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나 위원회시 민간전문가를 제외하는 경우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군수품 관리 훈령 제29조의2 (내용연수)	장비 수명관리 지침 제7항 (장비 수명평가위원회 운영)
제시한다. 이때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외부기관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장비 전력화(조달) 이후 최초 운용수명은 설계수명을 적용한다. 최초 운용수명이 설정된 이후의 <u>수명연장 및 단축의 절차는 ‘장비 수명관리 지침’을 적용하며, 설정된 수명이 초과되지 않도록 적기에 수명연장 또는 단축 후 도태 및 불용결정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u> ④ 장비의 수명관리는 각 군 군수사령관이 군수통합정보체계를 활용하며, 3군 공통품목은 주도군 책임하에 관리한다. ⑤ 기타 세부사항은 ‘장비 수명관리 지침’을 적용한다.	

□ 국방부는, 군수품 관리의 합리성과 무기체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용연수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내용연수와 관련하여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군수품관리법」의 하위 국방부 행정규칙인 「군수품 관리 훈령」 제29조의2(내용연수) 등에 포함되어 있고, 그에 따라 군수품이 관리되고 있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07